

제1장 총 칙

제 1 조(명칭) 본 연합회는 전국환경관리인 연합회(이하 "연합회"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 2 조(위치) 본 연합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전국 필요한 지역에 지역협의회를 둔다.

제 3 조(목적) 본 연합회는 환경관리인의 권익보호와 기술개발, 기술정보 교류에 의한 친목도모로 관리인의 지위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환경오염방지에 앞장서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4 조(사업) 본 연합회는 제 3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.

- 1) 회원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회원관리
- 2) 오염물질 처리기술 보급 및 정보교류
- 3) 오염물질 처리기술 연구발표회, 토론회등 추진
- 4)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지도
- 5) 현장실무 문제점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추진
- 6) 연합회 회보등 간행물 발간
- 7) 기타 환경보전 및 공익을 위한 제반사업

제2장 회 원

제 5 조(회원의 구성) 본 연합회 회원은 환경관리인(배출시설관리인 및 환경기사)으로서 취지에 찬동하여 등록된 지역협의회에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 하므로서 회원이 된다.

○ 특별회원: 본 연합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연합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개인, 법인 또는 단체

제 6 조(회원의 의무와 권리) 본 연합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.

- 1) 회원은 본 연합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해야 하며,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.
- 2) 회원은 본 연합회 총회 및 회합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.
- 3) 회원은 본 연합회의 결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- 4) 총회에 파견할 대의원 선출권
- 5) 연합회의 조사, 연구, 기술 개발등에 관한 자료제공 및 활용할 권리를 가진다.

제 7 조(회원의 자격상실) 1.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
- 1) 본 연합회 사업을 태만히 하거나 저해한자
- 2) 본 연합회의 명예를 훼손한자
3. 1항에 의한 사유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때에 기납부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타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.

제 8조(회비) 본 연합회 회비는 입회비, 월회비 및 특별회비로 구분하며,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3장 임 원

제 9 조(임원) 본 연합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, 비상임으로 한다.

1) 회장: 1명

2) 부회장: 약간명(수석 부회장 1명)

3) 이사: 약간명

4) 감사: 2명

제10조(임원의 임기)

- 1)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.
- 2)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을 거쳐 보선할 수 있으며, 차기 총회에 이를 고하여 한다.
- 3) 후임자의 임기는 전 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
- 4)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

제11조(임원의 선출) 본 연합회 임원의 선출은 다음 법에 따른다.

- 1) 회장, 부회장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2) 이사의 선출은 회장, 부회장을 포함한 5명 전형 위원회에서 선임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2조(임원의 직무) 본 연합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호와 같다.

- 1) 회장은 본 연합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연합회 회무를 총괄한다.
- 2)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에는 수석 부회 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.
- 3) 감사는 회무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4) 이사는 본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보좌한다.

제13조(고문) 본 연합회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

- 1) 고문은 본 연합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자 또는 환 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의 의견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.

제14조(명예회장)

- 1) 본 연합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자로 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 회장에 추대할 수 있

제4장 총 회

제15조(총회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 다음 각항에 의거 소집한다.

- 1)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.
- 2)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중에 소집한다.
- 3)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 - 가.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집요구가 올때
 - 나. 회원 6이상 동의를 얻어 회의 목적과 소집시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총회를 요청한때
 - 다. 전항의 요청이 있을때에는 회장이 2주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제16조(총회의 소집 절차)

- 1)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총회 개최 1주일에 회의사항, 일시, 장소를 기재하여 회원에게 통하여야 한다.

제11조(총회의 의결) 총회의 의결을 다음 각호와 같다.

- 총회의 의결은 제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(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)

-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고 회장이 유고시에는 수석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.

-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치 못하는 회원중 회의전까지 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
- 지역 협의회 회원은 대의원으로 하여금 총회 참석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18조(총회의 의결사항)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-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
-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항

-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

- 이사회가 제출한 안건의 승인사항

- 본 연합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

-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19조(대의원회)

- 지역 협의회는 총회에 파견할 대의원을 둔다.

- 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지역 협의회원을 대표한다.

- 대의원회는 지역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회원 30인당 1인으로 한다.

- 대의원은 회장단의 선출권을 가진다.

- 대의원은 지역 협의회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 5 장 이 사 회

제20조(이사회의 구성)

-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감사, 및 이사로 구성한다.

제21조(이사회의 소집) 이사회는 다음 각항의 경우에 소집한다.

-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할 수 있으며, 그 의장이 된다.

- 정기 이사회는 년 2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.

- 이사회의 의결은 제적 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(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)

-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 까지 회의 목적, 일시, 장소를 명시하여 각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- 임원은 이사회의 소집이 필요한 경우 재적임원 2/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의 소집을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 회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22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각항을 의결한다.

- 회원의 가입자 및 제명

-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

- 결원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

-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5) 총회 준비에 관한 사항

6)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
7) 총회의 위임사항 및 부의 사항

8) 기타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

6 장 조 칙

제23조(기구) 본 연합회 기구표는 별도로 정한다. (별표1)

제24조(사무국)

- 본 연합회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유급으로 한다.

-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유급으로 한다.

- 사무국장 및 직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 한다.

- 사무국장은 사업실적 및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며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.

제25조(지역 협의회) 본 연합회 조직내에 각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,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.

- 지역 협의회 회칙에 따른 사업활동

- 본 연합회와 원활한 협조

- 본 연합회 사무국운영에 관한 협조

- 간행물 발간에 관한 자료 협조

- 기타 본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 7 장 재정 및 회계

제26조(재정)

- 본 연합회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-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

- 찬조금

- 기타수입

- 수입금은 정관 제 4조에 명시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.

- 현금은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를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.

제27조(예산결산)

-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회장이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- 결산서는 회장이 작성하여 감사를 필한 후 이사회의 승인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28조(회계년도) 본 연합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익년 1월 말일로 한다.

3 장 별 칙

제29조(시행규정) 본 정관에 없는 사항으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

제30조(해산) 본 연합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부 칙

제 1조(시행일) 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